

구미시 진학 ·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진학·진로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진학·진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범위(안 제3조)
- 다. 진학·진로지원센터 설치, 조직 및 인력(안 제4조, 제5조)
- 라. 진학·진로지원센터 이용대상, 이용료 및 반환(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마. 진학·진로지원센터 위탁운영, 지도·감독 (안 제9조, 제10조)
- 바. 진학·진로교육 협의체 구성, 준용(안 제11조,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학·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학·진로교육”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학·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학교육, 진학상담, 진학·진로정보 제공,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학·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학·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학·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학·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학·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학·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진학·진로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의 진학·진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학·진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학·진로교육 및 상담, 진학·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6. 그 밖에 진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이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진학·진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진학·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진학·진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진학·진로 지원센터 이용료(제7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학생	감면학생	
1:1 진학컨설팅	1명/1회	50,000원	20,000원	※ 감면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③ 장애인 ④ 국가보훈대상자 ⑤ 아동양육시설 아동 ⑥ 다자녀가정
그외 프로그램		무료		
※ 비고				
☞ 감면대상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를 구미시로 두고 만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6개월 미만 발급 증명서류 제시)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진학·진로 지원센터의 설치)
-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위탁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구미시 진학·진로 지원센터」 연도별 운영 예산
 - 인건비(140,000천원) : 센터장 외 2명 인건비
 - 사업비(186,000천원) : 1:1 진학컨설팅, 전문가 특강, 학부모 아카데미 등
 - 운영비(24,000천원) : 공과금, 홍보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350	355	360	365	370	1,8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350	355	360	365	370	1,800
민간						
기타						
합계	350	355	360	365	370	1,800

※ 인건비 상승분(연도별 소요예산의 1.5%) 반영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차후 사업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7급 박민아(054-480-2712)

소 관 부 서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미
	팀 장	정 선 심
	담 당 자	박 민 아 (480-2712)